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87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박수영 · 이인선 · 김민전

조은희 · 김은혜 · 최보운

김미애 · 박정하 · 권영세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거래정보의 제출방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일 것
2.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다.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 라. 그 밖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 ① (생 략) <u><신 설></u>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 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 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 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 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 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의16제1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

2.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의 거래에 대하여 「전기통신
사업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다.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
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라. 그 밖에 거래사실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
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또는 중
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

-----.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

1. 2. (현행과 같음)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
---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

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
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
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
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
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
례대로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
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
및 이월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제1항
-----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제4항-----

제4항-----

-----.

⑥ ----- 제5항-----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의 범위,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거래정보의
제출방법 -----.